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7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최형두・박상웅・이종욱

김예지 • 최수진 • 윤한홍

김종양 • 박충권 • 신성범

박정훈 • 이상휘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 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 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4條(業務) ① 公社는 다음 各	第54條(業務) ①		
號의 업무를 행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 보유자산의 임대ㆍ개발 및		
	<u> 운영</u>		
<u>11</u> . (생 략)	<u>12</u> .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